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4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 박완수 · 김진표 · 홍정민

백혜련 • 최형두 • 정춘숙

이달곤 · 심상정 · 김성원

추경호 · 류성걸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및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0여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에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

대도시의 발전은 곧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관됨에 따라,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인 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대도시 특례부여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안 제175조 제2항)과 함께 행정·재정 권한 및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치분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7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③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협의하기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세부 구성 및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제2항에 따른 특례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를 각각 "특례시"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u>수</u>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
	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
	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
	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
	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
	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u><신 설></u>	③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협의하기 위해 '100만 대
	도시 특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
	고 세부 구성 및 운영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 </u>	④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